

본 회 기 사

이 사 회

제6회 이사회 1969년 3월 4일 12시50분 협회 회의실에서 김재철 회장, 강진삼, 강대웅, 김진철, 안인모 이사 참석하에 개최함.

1. 자재전시회: 추진상황 설명이 있는 후 담당 이사가 건설연구소 황과장과 함께 협의하여 장소문제를 결정토록 건설부에 건의키로 함

2. 경남지부회원 표창 보조: 금후 표창계획은 지사에 의하여 내신토록 할 것

3. Fy69 예산승인 관계: 건설부의 의견을 타진한 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연석회의를 통하여 사무처에서 결정키로 할 것.

제7회 이사회 1969년 3월13일 18.00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 김재철, 강진삼, 강대웅, 안인모, 김진철 이사 참석하에 개최함.

보고사항.

1. 회원 및 직원용 신분증 경신
2. 5.16민족상 수상 후보자(배기형씨)구비서류제출
3. 서울지부 신입회원 사무소등록사항 보고특측
4. 충주분소장 직원해임 통보
5. 서울지부 회원 징계(제명 10명, 자격정지 3명)
6. Fy69 예산 승인 건설부와 절충증
7. 회관전립용 매지 분양신청 회신접수
8. 자재전시회 건설부 건설주간행사에서 삭제됨.

부의사항

1. MIT장학생추천: 각지부에 전통으로 하달할 것
2. 감정서 송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 협회에게 이서하여 협회장 명의로 낼 것

나. 감정료는 본인이 받고 영수하며 세금도 본인이 내도록 할 것.

3. 경기도지부 조사분소장 등록거부: 지도부 담당이사가 조사 후에 조치하도록 할 것.

4. 건설용역업자등록: 건축사법에 규정된대로 규정이 법에 선행 될 수 없는바 행정명령 재변경 공문을 작성하여 건설부와 협의 해결키로 함.

5. 서울·강원지부 자매결연: 있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양지부를 포함한 전지부에 공문발송할 것.

제8회 이사회 1969년 3월 18일 18.00에 협회 회의실에서 김재철 회장, 강진삼, 강대웅, 김진철, 안인모

이사 참석하에 개최함.

보고사항

1. 서울시지부 임직원서 23명분 접수
2. MIT공과대학 장학생 추천
부산 신옥강, 경기 문정희, 경북 임종순
3. 설계용역 등록: 건설부에 시정요청공문 발송(건설부에서 시행착오였음을 시인하고 시정약속함)
부의안건

1. 건축행정기구개혁 연구: 학회와 가협에서 3단계 공동추진을 요청한바 본협회 위원으로 강대웅, 안인모, 김진철 이사를 추천하고 학회에 통지함.

2. 보조원수첩 근무상황 기재에 대하여(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서울지부):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키로 함.

3. 국회의사당 설계감리위원 위촉 공식으로 공문요청이 있을 때 다룰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자격으로 하기로 함.

제9회 이사회 1969년 3월20일 18.10에 협회 회의실에서 김재철 회장, 강진삼, 강대웅, 김진철, 안인모 이사 참석하에 개최함.

보고사항

국회의사당 설계감리 3월19일 정식 거부함.

부의사항

1. 보조원 수첩 근무상황 기재에 대하여: (김만성·송관식, 실시 이전의 경력사항 인정문제가 모호하여 1969년 1월31일 자료 신고 접수했음)

근무기간이 증명되면 무조건 발급해 주도록 할 것

2. 2월분 결산 및 4월 실행예산 승인

3. 국회용역문제에 대하여: 각지도 지부장 연명으로 건의서를 내도록하고 결과를 각지도지부, 가협회, 학회에 통보할 것.

4. 분소규정: 지도부에서 수정하여 다음 이사회에 제출할 것.

5. 사무처 규정, 급여규정 및 이에 수반되는 정관 개정도 사무처장이 구분하여 처리토록 할 것.

6. 부산지부 면허대여자(김호원)에 대하여 담당이사가 출장 진상조사 후 처리키로 함.

7. 서울시 지부 주택전시회에 대하여 회원작품은 추대작품으로 하고 회원작품을 우선토록 할 것.

제10회 이사회 1969년 4월3일 14.00에 협회 회의실에서 김재철 회장, 강진삼, 강대웅, 안인모, 이봉로, 김진철 이사, 구윤희 감사 참석하에 개최함.

보고사항

1. 회비납부카드 및 가입회원 구비서류 재정리
2. 지하시설 제한에 관한 민법 244조 질의회신
3. 부산 김호원 회원건 담당이사 출장 조사처리
4. 건축법 제47조에 대한 질의회신(경남지부)
5. 건설용역업자 등록에 대한 시정공문서 접수
6. 소사분소 무면허업자에 대한 고발조치 지시
7. 설계보수요율의 건축공사비산출 기준에 대한 지시공문 발송(시도지부)

8. 감정인 추천
9. 회지 3월호 인쇄완료
10. 서울시지부 작품전시회 시정공문 발송
감사결과보고

총전 감사 각도와는 달리 특히 경리 업무면에서 세밀히 실시 했음. 회원 복지를 위한 사업부진, 서울대책, 보수요율, 사법개정추진부진, 2중지, 면허대여자에 대한 대책 등 각시도지부의 각종 미납회비 징수의 부진 경리지출에 있어 지적당한 것은 해명 후 감사에게 제출요망, 결산총회 이전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 확인하겠음.

부의안건

1. 표준국심의위원추천
가. “비닐타일” 및 아코오스틱 보오드” 심의위원~이봉로

나. “프린트합판” 및 “미장마루판”심의위원~강대웅

2. 총주분소장 임명승인
3. 서울시지부 회원 징계 해제요청
황규열 회원 해제토록 함
4. 제철 문화원 위법행위 조치
5. 마산요업센타, 고성 우체국청사 등록 진상 조사 후 처리키로 함.

6. 진해분소 철폐 : 입시총회를 개최한 후에 보고토록 시달함.

제11회 이사회 1969년4월11일 17.30에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 및 이사 전원 참석하에 개최함.

보고사항

1. 지부 자체감사 실시보고 시달
2. 국회의사당 용역설계 시정 건의서 제출
3. 지부장, 기획위원 연석회의 개최 공문 발송
4. 총주분소장 김진용씨 임명 승인
5. 포항종합제철 건축설계업자 추천 의뢰 접수
6. 황기정 회원 징계해제 요청
7. 서울시청 징계회원 건축사무소 등록취소공문접수
8. Fy69 예산 보안 재신청

부의안건

1.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큰 문제점만 다루고 지부장, 기획위원 연석회의를 개최 건축사업무연구위원회에서 세부를 다루도록 함.

2. 강원도지부 황기정 회원의 징계해제 :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해제토록 함.

3. 서울시지부 징계회원 구제방안 : 현시점에서 재입 회해야 함.

제12회 이사회 1969년 4월24일 16.00협회 회의실에서 회장 및 이사 전원 참석하에 개최함.

보고사항

1. 강원도지부 황기정 회원 회비 12,400원 납부
2. 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통보 및 시달
3. 건축청 신설에 대한 건의서 제출
4. 설계보수요율의 건축공사비 기준에 대한 유권적 해석 요청
5. 건축공사비 기준에 대한 공문발송(감사원, 산림청)
6. 건축설계 수의계약요청(국방부, 육본공병감실, 건설본부)

7. 건축법 제41조 및 시행령4조 바닥면적 산정에 대한 유권적 해석 요청

8. 건축사 업무에 필요한 표시행위 준수지시(지부)
9. 포항제철 설계업자 추천의뢰에 대한 회신
10. 마산요업센타 도서등록진 조사
11. 설계보수요율 개정안 작성
12. 면허대여자 규제 방안작성
13. 건축기자재센타 추진위원회 구성 협조 요청
14.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림관 본협회 방문 예정

부의안건

1. 3월분 결산, 5월분 실행예산 승인
2. 지부총회 실시 촉구
확정된 결산서를 5월20일까지 송부하도록 시달할 것
3. 동방건축 이백길 회원의 윤리위원회 제소 : 지도부에서 진상조사 후 처리할 것.

4. 서울시지부 김혜진 회원 징정 : 휴업기간 중 월정회비를 납부토록 공문 발송할 것

5. 건축사업무연구위원회 개최 결과 : 업무처리상 조기 상정이 불가능하므로 6월 국회에 회부되도록 추진할 것.

6. 유네스코 사무국 요원 공모에 대하여 각지부에 통보할 것.

7. 공업표준심의위원회에 김진천 이사 위촉

8. 판공비 지출결의서 결재 간소화.